|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계 보안 엑스포 2017 참가신청서** |  |  |

 |
|  |
| **■ 참가신청 및 계약자** |
| **회사명(국문)** |  |
| **회사명(영문)** |  |
| **회사주소** | ( ) |
| **회사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  |
| **TEL** |  | **FAX** |  | **URL** |  |
| **대 표 자** | **성 명** |  | **휴대폰** |  | **E-mail** |  |
| **담 당 자** | **성 명** |  | **직 위** |  | **부서** |  |
| **전 화** |  | **휴대폰** |  | **E-mail** |  |
| **※전자세금계산서** | **담당자** |  | **연락처** |  | **E-mail** |  |
| **전시품목** |  |
|  |
|  |
| **■ 참가신청 내역 및 참가비** |
| **부스타입** | **단 가 (원/VAT별도)** |  | **신청내역** | **조기신청가격** | **합 계 (원/VAT별도)** |
| **독립부스****(면적만 제공)** | **2,600,000 / 부스****1부스 = 9m2 (3\*3)** |  | **( )개 부스** | **원/부스** |  |
| **조립부스****(면적+기본장치 제공)** | **3,000,000 / 부스****1부스 = 9m2 (3\*3)** | **( )개 부스** | **원/부스** |  |
| **디렉토리 광고** | **□ 표4 (뒷표지)** | **5,000,000 원** |
| **□ 표2 / 내지1** | **4,000,000 원** |
| **□ 표3** | **3,000,000 원** |
| **□ 내지 Free Page** | **2,000,000 원** |
| **기타 협찬광고** |  |
| **\* 신청서 접수 후, 계약금 20%를 입금하셔야 해당 할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세계 보안 엑스포 2017 전시회 참가규정과****KINTEX의 전시규정을 준수함에 동의합니다.** | 신청일: | 2016년 월 일 |
|  | 성 명: | (인) |
|  |  |  |
| 세계보안엑스포2017 logo 1copy |
|  |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세계 보안 엑스포 2017(SECON 2017) 전시회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보안뉴스(주)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관자는 신청접수 순서, 참가비 납입순서, 참가규모, 역대 참가실적, 반입•반출 조건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자는 전시회의 공간 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

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관자의 허락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형 변경을 할 수 없

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전시

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2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잔금은 2017년 1월 13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해약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된 참가신청금은 반환

하지 않는다.

2. 전시자가 전시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전시자는 반드시 전시 개시 50일 이전에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신청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3. 전시 개시 전 50일 이내에는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전시자가 불가피하게 참가를 포기할 경우, 전시자는 전시회 신청부스 전체 참가비중 50%를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하며, 30일 이내 취소 시에는 70%, 행사 15일 이내 취소 시에는 100% 현금(참가비 총액 + VAT 10%)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

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기간 동안 시간 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주관자의 허락을 받은 후 시간외 사용료를 전시자가 주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모든 장치업체 선정은 킨텍스 전시장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자 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내 보안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회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선행되어져 있어야 한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 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